

거창군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관리조례안

의안 번호	'99-60
----------	--------

제출일자 : 1999. 10. 23.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 제정이유

- 21C 무한경쟁 시대를 대비,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운영 관리방식을 탈피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 위탁운영, 민간부문의 기술 및 창의성과 경영효율성을 활용하여 우리군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군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적용범위 (안 제3조)
- 관리운영등(안 제4조)
- 수탁자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안 제6조, 제7조)
-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안 제8조)
- 조직 및 인원 (안 제9조)
- 수탁자의 의무 (안 제10조)
- 위탁업무 (안 제11조)
-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안 제12조)
- 위탁운영비 (안 제13조)
- 자산투자비등 부담 (안 제14조)
- 주민복지 향상 (안 제15조)

□ 제정근거

- 하수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3항
- 거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 하수종말처리시설 민영화추진지침, 경상남도 수질 67432-115 (99. 2. 8)

거창군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관리조례안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하 “하수처리장”이라 한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수”라 함은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 또는 우수를 말한다.
2. “하수도”라 함은 하수(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하수는 제외한다)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3.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사용개시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4. “하수처리장”이라 함은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하천, 기타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처리장내 분뇨처리시설을 포함하여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처리장으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6. “수탁자”라 함은 군수와 협약에 의해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업체를 말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하수처리장의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4 조 (관리운영등) ① 하수처리장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 운영한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제7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시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군수와 수탁자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년 이내로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하수처리장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하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수 있다.

⑤ 군수는 하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릴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등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5 조 (명칭 및 위치) 처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 6 조 (수탁자의 선정기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업체의 수행능력, 재정부담능력, 기술 및 인력확보 상황,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제 7 조 (수탁자의 선정방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 후 심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 등의 방법에 의해서 선정할 수 있다.

제 8 조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거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9 조 (조직 및 인원) ① 수탁자는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하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인원과 직급별 정원은 수탁자의 자율에 의하되 수탁자는 관리원 일부를 군수가 추천하는 관내 주민의 채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경우 군수는 하수처리장의 운영에 관한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 10 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하수처리장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하수처리장 운영업무와 관련하여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하수처리장 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시설전반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보수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11 조 (위탁업무) 수탁자에게 위탁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하수처리구역내 토구준설 및 유지관리
2. 하수처리장시설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3. 오.폐수 처리
4. 하수처리장 시설 및 기기의 유지관리
5.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
6. 하수처리장 운영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7.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시험
8. 기타 하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12 조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 할 수 있다.

1.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
2. 하수처리장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 13 조 (위탁운영비) ① 하수처리장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한다. 단, 군수가 필요할시는 하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비는 년액으로하고 매분기 분할 지급한다.

③ 제2항의 위탁운영비는 1년단위로 산정하되 정부가 공표하는 도매물가 상승율과 기계, 기기의 내구연한을 감안하여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위탁계약 첫해에는 군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운영비 범위내에서 위탁운영 공모시 수탁자가 제시한 운영비를 적용한다.

④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후 2월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4 조 (자산투자비등 부담) ① 시설의 증설 및 개선으로 인한 기자재, 비품등 고정자산의 취득과 긴급한 시설보완 등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평시운영비로서 부담이 어렵다고 군수가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비용을 군에서 부담한다.

제 15 조 (손해보험의가입) ① 수탁자는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가입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 16 조 (주민복지향상) ① 수탁자는 하수처리장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하수처리장 운영시 부대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등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경제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경영하여야 한다.

제 17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명칭과 위치

명 칭	위 치	처 리 구 역 (배수구역)
거창하수종말처리시설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1239-50	거창읍 일원
가조하수종말처리시설	거창군 가조면 대초리 699-85	가조면 일원